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52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나526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 선고 2019가단45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변론 종결 2020. 12. 9.

판결 선고 2021. 1. 2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 선고 2019가단45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6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C과,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000,000원을 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9,000,000원 중 3,000,000원을 2016. 12. 20.에, 6,000,000원을 2016. 12. 25.에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10.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1078호), 2019. 10. 31. 'C은 원고에게 14,000,000원(원금 10,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10,000,000원(원금)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C은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90777호). C은 그 항소심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의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 변제를 위하여 2020. 1. 6. 9,600,000원, 2020. 1. 8. 850,000원 합계

10,4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

라. 위와 같이 변제를 받게 된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종전의 청구인 ①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② 이자 4,000,000원 청구 중 ①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이에 따라 ① 청구에 대한 위 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② 부분 청구는 2,2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이자

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은 선이자로 지급한 1,000,000원(2017. 5. 20.까지의 5개월 분) 외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은 원고에게 2017. 5. 21.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일인 2020. 1. 8.까지 33개월분의 이자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C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2. 1. 사망하였고, C의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위 항소심에서 2020. 9. 3. 원고가 주장하는 월 200,000원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자 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및 자녀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한 원고의 이자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한편, C은 2018. 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669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원고로부터 2016. 12. 20. 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원금 9,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거나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

C 및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해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차용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2020. 1. 6. 9,600,000원, 2020. 1. 8. 850,000원 합계 10,450,00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변제받은 후 관련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재윤

판사전호재

판사유성현

별지